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허12388 권리범위확인(상)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구민승, 조희우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더웨이브 담당변리사 조슬이, 진은정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김찬미

피 고 C(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성주아, 서희원

소송복대리인 특허법인 위더피플 담당변리사 김헌주

변 론 종 결 2025. 1. 17.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 1. 특허심판원이 2024. 4. 9. 2023당83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3, 4호증)
 -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15. 6. 8. / 2016. 6. 10. / 제1183780호1)
 - 2) 상표권의 취지: 입체상표
- 3) 상표의 설명: 이 입체상표는, '곰 모양 젤리'를 나타내며, 제출한 상표견본은 입체적 형상을 3차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4) 상표견본:



5) 지정상품: 제30류의 과자(Confectionery)

¹⁾ 상표원부에는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상표임"이라고 쓰여 있다.

나.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2) 사용상품: 젤리2)

다. 이 사건 심결 경위

- 1) 원고는 2023. 2. 14.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2024. 4. 9. '확인대상표장은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상표로서 사용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2023당8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 1)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다.
- 2)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특징부가 달라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3) "하리보(HARIBO)"라는 표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정한 곰 형상인 이 사건 등록상표 자체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제9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

²⁾ 엄밀히 말하면 '구미(gummy)'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일상 언어에서는 '젤리(jelly)'가 구미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원고와 피고도 이들을 특별히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하에서 젤리로 통칭한다.

나. 피고

- 1) 확인대상표장은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다.
- 2)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3)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된 상표의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결 당시 젤리에 관하여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는 상표이다.

3.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한지

가.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었는지

- 1) 관련 법리
- 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 고 2006후2295 판결).
- 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품과의 관계, 해당 표장의 사용 태양,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503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6, 8, 9, 13 내지 19, 23, 26 내지 41, 50, 55, 5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 내지 23, 27 내지 46, 50, 51, 5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⑦ 원고는 2002. 3. 21. 설립되어 "E(E)"라는 상호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당과 류(糖菓類, confectionary)를 판매하는 회사로, 원고 누리집에서는 'E는 초콜릿, 캔디, 쿠키, 젤리, 구미, 캐러멜 등을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따라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형 태의 Pick & Mix 매장으로, Pick & Mix할 수 있는 벌크 제품 약 250종을 포함, 낱개 패키지 제품과 캔디머신 등 소품까지 총 500여 종을 판매하고 있으며, 전 제품은 유럽 (독일,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과 미국 최고의 업체에서 최상의 제품을 선별해 독점 직수입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법인등기사항증 명서, 갑 제38호증).



④ 원고는 "Pick & Mix할 수 있는 벌크 제품"으로, 확인대상표장과 같은 곰 모양 젤리를 포함하여 콜라병, 지렁이, 거북이, 과일, 알파벳, 하트 등 여러 형태의 젤리를,

"Weeny Beeny." 또는 "Weeny Beeny." 표장이 붙은 포장지에 넣어 판매하고 있다.





©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을 비롯한 다양한 곰 모양 젤리를, "유기농곰모양구미", "빅베어모양젤리", "테디베어모양구미", "트리플컬러곰모양구미" 등과 같은 문구를 써서 판매하고 있다(다른 형태도, 예컨대 "알파벳모양구미"와 같은 문구를 써서 판매).



●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2015. 6. 8.) 전까지, 1986년 "F"에서 출시한 "꼬마곰"을 비롯하여, 여러 업체들이 다음과 같은 곰 모양 젤리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었다(날짜는 '해당 사진이 포함된 인터넷 게시물의 작성일' 등 확인된 판매시점이다).





⑪ 한편 피고가 사용하는 "하리보(HARIBO)" 상표는 1920. 12. 13. G(G)이 독일본(BOnn)에서, 자신의 이름과 회사가 설립된 도시 이름의 두 글자씩을 따서 만든 것이다. "하리보(HARIBO)" 측은 1922년 "춤추는 곰(Tanzbär)"이라고 이름 붙인 세계최초의 곰 모양 젤리(gummy bear)를 출시하였고, 1960년 "춤추는 곰"을 리브랜딩하여 '황금 곰'이라는 뜻의 "골드베렌(GOLD-Bären)"을 출시하였으며, 1978년에 확정한 "골드베렌(GOLDBÄREN, Goldbären)"(곰 모양 젤리)의 형상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있다(갑 제6, 26호증, 을 제23, 34, 37, 39, 38, 45호증 등 참조).3)

(B) "하리보"4) 제품은 오늘날 120여 개국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곰 모양 젤리("골드베렌") 외에도,5) 콜라병, 지렁이, 거북이, 과일, 알파벳, 숫자 등 다양한 형태의 젤리를 포함한다(을 제11, 13, 38, 45호증).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정식으로 수입되기 전에도 "하리보"의 2014년 매출액이 6,934,543유로[1유로 미만 버림(이하 같다), 원화 약 97억 원6)], 그중 위 곰 모양젤리 매출액이 5,300,737유로(원화 약 74억 원, 전체 매출의 약 76.4%)였고, 2015년은 국내 매출액이 8,790,858유로(원화 약 111억 원7), 그중 곰 모양젤리 매출액6,966,719유로(원화 약 87억 원, 전체 매출의 약 79.3%)였다(을 제15호증). "하리보"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텔레비전 광고비로 약 150억 원을 지출하였고(을 제32호증), 2016년 이래 국내 '추잉푸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갑 제6호증).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10, 11, 12, 20, 21, 22, 44 내지 48, 51 내지 54호증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앞에서 본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매장에서 판매되는 곰 모양 젤리 형상 중 하나인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고, 상품의 식별표지, 즉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³⁾ 쾰른고등법원 판결(갑 제26호증, OLG Köln, Urteil vom 02.10.2020 - 6 U 19/20, 3문단)과 쾰른지방법원 판결 (을 제34호증, LG Köln, Urteil vom 23.08.2016 - 33 O 82/16, 2문단)은, '1978년에 확정된 형상이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다'고 인정하였고, 그 사실인정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⁴⁾ 오늘날에는 본사인 H를 비롯한 여러 자회사, 계열사가 "하리보 그룹"을 이루고 있다고 보이나(갑 제5호증, 을 제11, 13, 22호증 등 참조), 통칭하여 "하리보"라 한다. 피고는 "하리보"의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회사이다(을 제21호증 참조).

⁵⁾ 국내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은 입체상표(제1183778~783호)와, 그중 정면도만을 표장으로 한 일반상표(제 1166453호~458호)가 여섯 색으로 등록되었다(빨간색, 다홍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투명색, 을 제20, 21호증).

^{6) 2014}년 평균 환율을 매매기준율에 따라 '1,398.81원/유로'로 계산. 이하 같다.

^{7) 2015}년 평균 화율을 매매기준율에 따라 '1.255.78원/유로'로 계산. 이하 같다.

수 없다.

가) 원고는 온·오프라인 "E" 매장에서, 곰 모양뿐 아니라 콜라병, 지렁이, 과일, 하트 등 다양한 형태의 젤리를, "E"라는 표장이 붙은 포장지에 넣어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젤리의 "모양"을 직접 표기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젤리를 구분하고 있고, 곰 모양젤리에도 "유기농곰모양구미", "빅베어모양젤리", "테디베어모양구미", "트리플컬러곰모양구미" 등과 같은 문구를 쓰고 있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전에도, 원고와 "하리보"를 비롯한 여러 업체의 다양한 곰 모양 젤리가 국내에 출시되어 있었고, 이들은 "F"(한국, 이하 괄호 안은 설립국), "I"(미국), "J리"(독일), "K"(튀르키예) 등 각자의 문자상표가 표시되어 자타상품 구별이 가능하도록 유통·판매되고 있다.

다) "하리보"의 곰 모양 젤리 상품이 이 사건 심결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하리보"는 곰 모양뿐 아니라 콜라병, 지렁이, 거북이, 과일, 알파벳 등 다양한 형태의 젤리를 판매하고 있고, 이들 제품에는 모두

"HARIBO"가 함께 사용되었으며, 이미 거래계에 여러 업체의 다양한 곰 모양 젤리 상품이 유통되고 있었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이곰 모양 젤리 일반을 피고 측("HARIBO") 출처표시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도 2024. 12. 20. 변론기일에서 '곰 형상의 모든 젤리가 피고 권리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8)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원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

⁸⁾ 제1회 변론기일 조서 참조.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나.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1) 관련 법리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유사한지는 그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해당 상품에 대한 표장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및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과 인식 등 그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상품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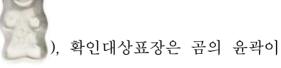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과자(Confectionery)"는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된 '젤리'와 상품이 같거나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공보와 원부 '상표의 설명'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곰 모양 젤리'를 나타낸다고 쓰여 있다.

나) 표장의 외관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 모두 곰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모티프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는 '곰 모양 젤리'라는 모티프 일반에까지 확장될 수 없고, 입체상표의 구체적 표현방식에 국한된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외관을 대비하면, 두 표장 모두 ① 정면을 향해 있는 곰을 형상화한 점, ② 머리 위쪽에 두 귀가올라와 있는 점, ③ 코 부분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점, ④ 짧고 뭉툭한 팔(앞다리), 다리(뒷다리)가 몸에서 튀어나와 있는 점, ⑤ 두 팔이 몸통 중간 지점 옆쪽에서 앞으로나와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등록상표는 곰의 귀, 코, 팔, 다리가 다소 뾰족한 반면, 확인 대상표장은 귀, 코, 팔, 다리가 동글동글하게 표현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등록상표의 곰은 크게 웃는 얼굴지만, 확인대상표장의 곰은 무표정한 점, ③ 이 사건 등록상표는 곰이 사람처럼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인 반면,9) 확인대상표장의 곰은 뒷다리가 앞으로 더 튀어나와 앉은 자세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등록상표는 곰 형상 바깥쪽을 둘러싼

두툼한 윤곽이 한 겹 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로 비교적 분명한 점(), 6 이 사건 등록상표의 곰은 배에 몰드에서 찍힌

점 같은 무늬가 있으나(),10) 확인대상표장에는 없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⁹⁾ 피고도 출원단계에서 '곰이 사람처럼 뒷발로 지지하여 똑바로 서 있는 형상'이라고 설명하였다(갑 제5호증, 을 제22호증 참조).

다) 표장의 호칭과 관념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곰을 형상화한 젤리로, '곰 모양 젤리', '곰 젤리', '곰돌이 젤리', '젤리 곰', '구미 베어' 또는 '곰', '곰돌이' 등으로 호칭 및 관념될 것이다.

그러나 유사하거나 상이한 수많은 형상을 통칭하는 용어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두 입체상표를, 그 외관이 유사한지에 관계없이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다면, 상표의 유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상표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참조).

앞서도 본 것처럼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곰 모양 젤리가 유통·판매되고 있고, 이들은 모두 '곰 모양 젤리' 등 통칭적 용어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인바, 이 사건 등록 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모두 '곰 모양 젤리' 등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통칭적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두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등록상표가 "하리보"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을 제25, 26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펜던트, 반지, 목걸이, 귀걸이, 휴대폰 케이스 등을 "하리보 펜던트" 등으로 부른 사례)이나 뒤에서 보는 사례만으로는, 곰 형상 모티프를 '하리보스타일'이라는 취지에서 그처럼 부르는 예가 있음을 넘어, 확인대상표장이 "하리보"로 호칭·관념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¹⁰⁾ 피고가 미국에서 2021. 4. 27. 등록받은 제6,331,501호 상표(사망)



라) 정리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이 달라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다.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비자들이 확인대상표장을 보았을 때 "하리보" 제품으로, 즉 이 사건 등록 상표로 오인·혼동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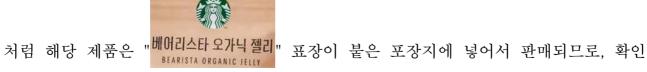
살피건대, 을 제24, 47, 48, 49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따르면, 확인대상표장의 형상을 한 젤리가 담긴 "(L) 베어리스타 오가닉 젤리" 제품을 구매하였던 소비자들이 인터넷 게시물에 다음과 같은 글들을 쓴 사례가 확인되기는 한다(아래 게시물 모두 위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인터넷 블로그 등에 작성한 것이고, 작성일이 확인되는 경 우에는 증거번호 아래에 기재하였다).



증거번호	내용			
을 24-1 (20/12/03)	스타벅스에도 젤리 있는거 아셨어요? 스타벅스에 갓더니 젤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소문난 젤리마니아라서 안살수가 없어서 사왔어요~ 곰돌이모양 젤리라길래 뜯기전부터 하리보젤리가 생각나더라고요 뜯고보니 딱 하리보 곰돌이 젤리모양 하리보젤리 같은 식감이겠구나 생각하고 딱 씹었는데!!! 하리보젤리는 탱글탱글 튕겨내는듯한 식감이면 스타벅스 젤리는 바로 스르르 잘리는 식감이더라고요 게다가 하리보에 비해 과일맛이 진하게~나요!			
을 24-2 (21/05/03)	사흥 예린이맘 오잉 스백에서 젤리도 나오나보네영 ㅋㅋ 처음보는데 하리보랑 비슷하게생겻네영 2021.05.30. 23:13 경기 꽃단미 작성자 젤리도 나오더라구용!하리보랑 비슷한대ㅋㅋ이게 더 부드러워용ㅋㅋ 2021.05.30. 23:21 2021.05.30. 23:20			
을 24-3	사실 모양이 하리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하리보 젤리의 식감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됩!! 하리보 젤리는 좀 단단한 젤리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그냥 우그러진다고 해야할까요?!	을 24-4	하리보 젤리와 식감이 완전 달라요 하리보는 쫀득 찐득한 반면 이건 댕강	
을 24-5	배어리스타 오가닉 젤리 (fea+. 스타벅스) 이거 진심 대존맛탱 젤리임 모양은 하리보처럼 생겼지만 식감, 향, 맛 모두 다른데 전부 내 취향			
을 24-6	모양은 그냥 하리보느낌 조금은 하리보를 기대하며 한입 먹었으나	을 24-7	먹어봤는데, 하리보같은 쫄깃함과 완전 달라요.	
을 24-8	치료사쌤한테 받은 스타벅스 쩰리 하리보처럼 생겼는데 훨씬 말랑하고 맛있다. #스타벅스베어리스타오가닉젤리	을 24-10	생긴건 하리보랑 똑같은데 다르다! 뭐랄까 양갱식감이랄까?	
을 24-9 (22/07)	선물받은 스타벅스 베어리스타 오가닉 젤리 모양은 하리보처럼 곰모양인데, 하리보는 너무 딱딱해서 먹기가 불편한데, 그에 비해 베어리스타 오가닉 젤리는 부드러워서 좋았다.			
을 24-11	스타벅스에서 파는 베어리스타 오가닉 젤리 상큼하니 맛있다! 생김새는 하리보 닮았지만 조금 더 크고 그 특유의 불량한 맛은 없다. 임산부 간식으로 추천!			
을 24-12	스타벅스 베어리스타 오가닉 젤리 하리보 곰젤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식감이 전혀달라요.	을 24-14 (22/09/16)	하리보와 비슷하길래 에잇, 했다가 완전 다른 식감에 깜놀! 부드럽다!! 훨씬 과일향 풍미가 많이 나구	

을 24-13	베어리스타 오가닉 젤리는 똥식감.		
	하리보 젤리 모양에 속았다 식감 완전 양갱 느낌		
	한개 먹고 봉인		
을 24-15	베어리스타 젤리 라는 게 들어있다면서 주셨는데 곰돌이 젤리인 하리보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포장지는 스타벅스라고는 되어 있지만 포장지에 그려져 있는 곰돌이만 보면 하리보나 다름없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것도 포장지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음료 잔을 꾸밀 때나 옆에 두고 하면		
	꽤 괜찮은 그림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모양도 조그마한 크기라 더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요.		
을 47	베어리스타 오가닉 젤리 2,900원		
	스낵류 중에서 금액이 제일 싼게 이거랑 쌀과자였던가?		
	하리보 생각하면서 픽했는데, 식감이 완전 다르다.		
	하리보는 전체적으로 쫀득한데, 스타벅스 젤리는 쫄깃함이 강하지는 않다. 턱관절 오케이^^		
	깔끔하게 잘 씹혀버림 ㅎㅎ 곰돌이 미안;		
	그리고 하리보보다 과일향이 많이나고, 달다ㅋㅋㅋ		
	6가지 맛인데, 오렌지,레몬,파인애플,사과,블랙커런트,라즈베리 이다.		
을 48	★★★★ pjj******		
(21/01/01)	하*보를 생각했는데 식감이 완전 달라요		
을 49 (21/01/26)	요 젤리의 비주얼은 너무나도 친숙한 곰돌이 모양! 하리보 쌍둥이 소		
	리 듣는 이유 있었네요.		
	The state of the s		
	이 곰은 스타벅스의 베어리스타에요. 6가지 과일 맛이 나는 4가지 색		
	감의 젤리랍니다.		
	하리보 고급 버전? #스타벅스오가닉젤리		
	스벅표 달달구리 메뉴! 음료, 디저트 다 아니고 젤리 가 주인공. 스벅의 얼굴인 베어리스타의 젤리 버전이 랍니다. 약간 하리보가 떠오르는건 기분탓?ㅋㅋ		

그러나 위 사례들을 보면, 소비자들은 확인대상표장이 곰 모양 젤리인 것을 보고 "하리보"를 단지 연상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자신이 사 먹은 제품을 "하리보" 제품 과 명확히 구별하면서 두 제품을 비교하고 있는바, 이를 가리켜 소비자들이 확인대상 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오인 · 혼동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위에서 본 것



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오인 · 혼동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인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확인대상표장은 젤리의 출처표시를 위한 상표로서 사용되지 않았고, 이 사건 등록 상표와 유사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판사 권보원